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87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박홍배 · 윤준병 · 이정현  
박정현 · 민병덕 · 김우영  
이수진 · 김문수 · 박해철  
김남근 · 한준호 · 오세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주주들과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 알기 어려워 소수주주들의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제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등).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를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을 “제6항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을 “사실을”로 한다.

1.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회사가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등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u>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u>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u>-----.</p> <p>1. <u>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u></p> <p>2. <u>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1조제1항에 따른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u></p> <p>3. <u>회사가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p>

② ~ ⑥ (생략)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 ~ ⑤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  
-----  
--사실을-----  
-----.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  
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등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하지 아니한 자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